신·구조문대비표

[KOLAS-SR-008]

현 행	개 정 안
현장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현장 시험 및 교정 ----------
제1조 적용범위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서비스 활동은 고정 표준실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피 교정기기의 이동이 불가하거나,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측정 기기가 설치되었거나 사용되는 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다. 이 지침은 이러한 현장교정에서 교정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그 유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교정기관이 특별히 적용해야 하는 추가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제1조 ------- 이 문서는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는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평가기준에 적용되는 추가기술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제2조 참고문헌 <신 설> KS Q ISO/IEC 17000 적합성	제2조 인용표준 이 요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

평가-용어 및 일반원칙 KS Q ISO/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현장 교정 및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A2LA 특별 요구사항 * 발행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 ----------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 <삭 제>
제3조 정 의	제3조 -----
3.1 고정표준실(Permanent Standards Laboratory) : 인정된 범위의 교정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환경의 영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 상설로 설치된 표준실	<삭 제>
3.2 현장교정(Site Calibration) : 고정표준실 이외의 장소에서 교정기관의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현장교정은 통상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3.1 현장 시험 및 교정 (Field testing and calibration) : 사업장소 재지, 부속시설(시험실 또는 표준실)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인정된 범위의 시험 또는 교정을 말한다. 이러한 현장 시험 및 교정은 다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3.2.1 현지출장교정 : 이동이 불가한 측정기에 대해 특별한 환경조건이 설정되지 않는 장소에서 교정기관에서 현장에 파견한 직원에 의해 수행되는 현장교정	3.1.1 불특정 장소에서의 현장 시험 또는 교정 : 고객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 이외의 불특정 장소(고객의 시설 포함)에서 비상시적으로 시험 또는 교정을 실시할 목적으로 공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 또는 교정
3.2.2 이동교정 : 일정 수준의 환경 조건 하에서 교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용이동차량 등에 환경조절시설 등을 갖추고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교정기관의 전문인력에 의해 실시되는 현장교정	3.1.2 이동시설에서의 현장 시험 또는 교정 : 시험 또는 교정을 위한 특정한 환경조건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전용이동차량 등에 시설을 갖추고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실시되는 시험 또는 교정
3.2.3 현장교정실내 교정 : 교정기관의 필요에 의해 주 고정표준실 이외에 지속적인 교정을 실시할 목적으로 정해진 장소에 현장교정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교정기관에서 파견된 직원 또는 지정 시 교정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기술인력에 의해 실시되는 교정.	<삭 제>
3.3 현장(Site) : 제3.2항에 규정된	<삭 제>

교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3.4 현장교정실(Site Calibration Laboratory) : 교정기관이 측정기 등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측정기 사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정 활동을 목적으로 현장의 정해진 지역 안에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교정표준실 및 시설	<삭 제>	
제4조 조직 및 경영	<삭 제>	
4.1 현장 교정실을 운영하는 경우 현장교정실의 소속은 공인받은 국가교정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모 국가교정기관의 현장교정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 품질경영시스템,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제4조 ----------	
5.1 현장교정을 실시하는 경우, 품질경영매뉴얼에는 현장교정의 운영 계획과 관련된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1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품질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식별해야 한다.	
5.1.1 현장 교정실 위치에 대한	<삭 제>	

	최신기록 및 사용 목적	
	5.1.2 각 현장에서 수행되는 특수 교정에 대한 세부 사항 주1) 제5.1.1항과 제5.1.2항에서 요구하는 기록은 반드시 품질경영매뉴얼의 일부로 하지 않고 별도의 품질경영시스템 문서로 관리, 보관할 수 있다.	<삭 제>
	5.1.3 조직이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교정품목 및 항목에 대한 별도목록(현장교정의 종류 구분 및 기술적인 검토기록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a) 현장 시험 또는 교정 수행이 가능한 분야 및 범위
	5.1.4 품질경영시스템이 어떻게 현장 교정에 적용되고 있으며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항(예를 들면, 현장 교정의 책임 및 권한의 계통을 보여주는 조직도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b)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을 수행하는 조직의 책임 및 권한, 소재지와의 관계
	5.1.5 현장교정에 대해 승인 받은 서명자, 서명자의 승인기준 및 서명자 권한의 한계 등 다음과 같은 기준에 관한 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삭 제>

- 자격 및 경험 - 전직원 조직도내의 직위 - 현장교정 결과 기록, 보고 및 검토 절차에 대한 지식 - 현장교정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재 교정, 특별한 확인,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인식 - 현장교정 범위의 인정 요건 및 조건에 대한 인식, 특히 교정성적서와 관련된 부문에 대한 인식 주2) 승인 받은 서명자란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에 서명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기구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2 품질경영매뉴얼의 관련 부문은 현장 교정을 수행하는 직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삭 제>	
5.3 현장교정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는 고정표준실에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이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삭 제>	

5.4 지명된 내부 심사자는 내부 심사 및 경영검토 과정의 일부로서 현장 교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방문해야 한다. 내부심사 과정에는 현장 교정이 지속적으로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별한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경영검토 과정에는 현장 교정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보증하기 위한 특별한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4.2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내부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고 다만,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방문하기에 제한적인 경우, 모의 실증을 통해 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 직원	<삭 제>
6.1 현장교정을 실시하는 국가교정기관은 현장교정을 수행하는 직원이 적절히 교육받고 능력이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별한 현장 교정을 수행하는 직원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 증거에는 교육 기록, 숙련도에 대한 기타 증거들을 포함해야 한다)	
6.2 교정기관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현장 직원은 교정기관에	<삭 제>

의해 고용된 훈련된 직원에 의해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인된 교정업무를 보조할 수 없다.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실무자로 고용되지 않은 현장직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인 교정을 수행할 수 없다.		
제7조 시설 및 환경	<삭 제>	
7.1 환경이 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교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영향량에 대하여는 그 영향의 정도를 특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영향량의 크기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기를 보유하여야 하며,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특별교정방법의 적용, 정확도 및 정밀도 및 데이터 등의 검증, 교정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2 교정이 불완전한 환경 하에서 또는 교정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교정성과에 대한 환경조건 및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삭 제>	

절차가 있어야 한다.		
7.3 무제한의 접근이 교정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을 때에는 교정 현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삭 제>	
제8조 장비 및 표준 물질	<삭 제>	
8.1 현장 교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운영, 유지, 보관 및 교정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한다. 장비 유지 및 교정 기록에는 모든 유지 및 교정과 관련된 장소, 날짜 및 운영자뿐만 아니라 사용중간의 보관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8.2 교정을 하기 전에 교정 상태 및 장비 사용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검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장비의 성능이 이동에 민감하지 않는 경우), 교정 상태 및 사용 적합성은 교정 전후에 미리 교정기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장비의 성능이 이동에 민감한 경우, 현장에서 교정에	<삭 제>	

앞서 확인의 절차가 이루어져야한다. 만약 장비가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교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즉시 업무에서 철수되어야 한다. 교정기관은 이런 장비가 이전의 교정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8.3 교정기관이 자신이 소유한 주요장비 외에 보조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이 장비의 공급자는 외부 서비스/물품의 공급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KS Q ISO/IEC 17025의 규정된 요건을 따라야 한다. 교정기관은 빌리거나 임차한 보조장비의 교정성적서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문서화하고 보관해야 한다. 빌리거나 임차한 보조장비는 사용 전에 손상 또는 기능저하 여부에 대해 확인되어야 한다. 빌리거나 임차한 보조장비가 교정기관이 소유한 장비와 똑같은 교정 및 다른 관리를 받았는지를 사용 전에 그리고 사용 중에	<삭 제>	

확인하는 것은 현장교정담당자의 책임이다.		
8.4 고객의 현장에서 교정을 수행하는 교정기관은 갖고 다니는 모든 장비의 전체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교정기관은 갖고 다니는 장비로 각 파라미터마다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불확도를 결정해야한다.	<삭 제>	
제9조 측정 소급성과 교정	<삭 제>	
9.1 현장에서 교정용 표준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동 중에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교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 환경 변화나 기타 관련 변수에 대한 이런 교정용 표준기의 변화 가능성 등은 미리 파악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9.2 교정용 표준기는 항상 적절한 환경 내에서 보관되어, 취급, 이동, 저장이 교정 상태를 무효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삭 제>	
주3) 교정용 표준기는 일반적		

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이루어진 측정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측정표준이다.	
제10조 교정 방법	제5조 방법의 선정, 검증 및 유효성 확인
10.1 최신의 교정 절차서(표준방법 또는 내부절차서)는 현장에서 교정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1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기 위한 인정분야 및 범위별 작업지침을 보유하여야 한다.
10.2 현장에서 작업하는 직원에 의해 요구되는 교정 절차를 보완하고 갱신하는 절차가 존재해야 한다.	<삭 제>
10.3 제10.2항의 절차는 고정시설과 현장교정에서의 환경조건, 사용 장비 등의 차이에 의해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절차 및 보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2 현장 시험 및 교정 방법이 사업장소재지 및 부속시설에서 실시하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10.4 가능한 한, 주된 환경을 고려하고 적절한 분석방법을 이	5.3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현장에서 수행하는

용하여 측정의 불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측정의 불확도를 평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교정기관은 방법의 수행도 평가 결과(method performance)가 표준 교정 방법의 정해진 관리 한계 내에 있음을 증명해야한다. 주4) 현장 교정에서의 측정불확도는 통상 고정표준실에서 수행된 것 보다 더 크다. 현장에서 불확도를 추정하는 교정기관은 고객의 현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5) 측정불확도 표현에 대한 ISO 가이드는 국제적으로 채택된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방법에 대한 검증기록으로 정해진 관리 한계 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불특정 장소에서 수행하는 현장 시험 및 교정의 경우, 이러한 검증기록은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수행되는 대표적인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 교정 장비의 취급 11.1 보관, 취급, 수송 및 준비 과정동안에 현장에서 교정될 장비의 손상을 막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삭 제>
제12조 기록 <신 설>	제6조 기술기록 6.1 성적서 발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얻거나 생성된 기술기

	록의 보관·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공인기관에 있다.
12.1 현장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 절차는 고정표준실에서 운영되는 시스템과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최초의 관찰사항, 계산, 데이터 이기 및 검사에 대한 기록, 담당자, 일자 등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은 향후 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습기, 오염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6.1.1 현장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백업절차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한 시점의 데이터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시험 및 교정에서의 데이터는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기관 스스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12.2 현장에서 얻어진 교정 데이터에 대한 안전과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6.1.2 백업파일은 해당 장비가 측정 시 생성한 파일 전체를 수정없이 보관해야 하며, 보관 방법은 측정 시 생성된 일자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비고 현장평가 시 장비 운영 후 생성되는 파일의 종류를

	비교하고, 백업된 파일이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 시점의 것임을 검토하여 생성한 파일 전체를 수정 없이 보관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6.2 현장에서의 샘플링 샘플링이 특정 지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한 근거와 선정된 지점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비고 현장시험결과를 확인한 후 시험절차에 따라 추가시험이 필요(시험 중 일부 또는 전체가 유효하지 않은 결과임을 확인한 경우)한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추가 시험의 사유 및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해당 시험의 현장 시험 사진, 출장기록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제13조 교정성적서	제7조 결과보고
13.1 현장교정에서 얻어진 결과	7.1 현장 시험 및 교정-------

는 발급된 성적서 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3.2 ISO/IEC 17025에서 규정된 교정성적서 기재사항에 덧붙여, 현장교정의 온도·습도 등 환경측정결과와 현장교정 장소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신 설>	----------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7.2 현장 시험 및 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 수행된 장소 등 ----------. 7.2.1 수행된 장소의 기재는 일반적으로 주소로 표기가 가능하나, 고객이 의뢰된 장소가 주소 내 특정 지역으로 국한될 경우 상세정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비고 1 이러한 상세정보는 특정 지역을 국한하여 지칭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비고 2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한 장소는 고객이 의뢰한 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신 설>	7.2.2 현장시험에서 수행된 장소가 주소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현장시험 수행 장소를 추적할 수 있는 이동 경로, 활동 지역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비고 1 선박운항 중의 현장시

	험은 oo 해상과 IMO번호(선박식별번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비고 2 철도(차량) 등 이동수단 운행 중의 현장시험은 'oo ~ oo 구간 철도(도로)'로 기재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01일까지로 한다.
부록 A 인정에 미치는 영향	부록 A. 현장 시험 및 교정 인정 프로세스
1. 신청 인정 신청 시, 현장교정을 실시하는 교정기관은 현장교정 대상 및 현장 교정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완전한 기술적 능력의 확인을 포함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현	1. ---- 이동시설을 포함한 모든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은 관리하는 사업장소재지가 조직구조에서 식별되어야 하며, 신청서류에 부속시설과 같이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하위분류로서 신청

장에서 수행되는 교정(관련직원 포함)임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현장교정실이 자신의 하나의 조직체인지 교정기관의 지사(支社)인지를 밝혀야 한다. 만약 현장 교정실이 법적으로 교정기관의 소속이면 교정기관 인정신청서 제출 시 동시에 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지사의 장비, 인력, 환경시설 등이 평가 시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사 등에서 이루어진 교정은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법적인 교정기관의 소속이나 모 기관이 대규모의 기관으로 각 지사가 사실상 별도의 기관 으로 운영되어 제각기 서로 다른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는 현장 교장실로 인정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각 운영요령 제18조(인정신청 및 평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서 현장 시험 및 교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추가하여 작성하고, 현장 시험 또는 교정과 관련된 장비, 인원, 시설 등이 식별되어야 한다.
2. 현장평가 지사 격인 현장교정실을 포함하는 평가는 현장의 품질경영시스템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2. -------- 불특정 장소에서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이 수행되는 경우, 대표적인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

가 포함되며, 이 경우 통상 현장교정실을 방문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 평가는 현장직원의 교정 능력의 평가를 수반하며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교정에 대한 내용이 주요 평가대상이 된다. 현지출장교정 및 이동시설을 이용한 교정에 대한 초기 평가는 한 개 이상의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를 실시한다. 다만 현장 방문이 제한되는 경우, 모의실증에 의해 입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동시설을 이용한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의 경우, 모든 시설의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이동시설의 경우 대표적인 것을 샘플링할 수 있다.
3. 인정 범위 현장에서 잠재적인 오류값이 포함되지 않도록 고객의 현장에서 교정을 수행하는 공인 교정기관의 인정범위는 중요하다. 공인 교정기관의 인정범위는 현장에서 어떤 파라미터로 제공되는가(또는 제공하지 않는가)를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현장교정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교정기관은 고정표준실과 현장에서 그들이 수행하기 위해 공인받은 특정분야 내에서 모든 교정을 규정하는 한개의 인정범위를 발급 받는	3. --------- 현장 시험 및 교정 항목은 KOLAS 공인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인정서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최초인정 후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의 범위 및 측정능력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인정기구에 신고하고 그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 현지출장 가능범위, 이동교정 가능범위, 현장교정실내 교정가능 범위에 대하여는 품질경영메뉴얼에 확실히 언급하여야 하며, 최초인정 후 교정범위 및 교정·측정능력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교정기관 인정기구에 신고하고 그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 설>

비고 불특정 장소에서의 현장 시험 또는 교정 서비스가 수행되는 경우, 인정서에 해당하는 항목에 'Y'로 식별한다. 이동시설은 해당 사업장소재지의 부속시설과 같이 하위분류로 주소 대신 차량번호 또는 관리번호로서 식별되어야 한다.

<신 설>

추가 기술요건 체크리스트((현장 시험 및 교정)

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적합	부적합
제4조 품질경영시스템			
4.1 품질문서 내에 현장 시험 또는 교정에 대한 식별	○ 현장 시험 또는 교정 수행이 가능한 범위(환경조건, 측정범위 등)의 식별		
	○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을 수행하는 조직의 책임·권한과 소재지와의 관계		
4.2 내부심사 범위	○ 내부심사(계획 등) 시 현장 시험 또는 교정을 포함하여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제5조 방법의 선정, 검증 및 유효성 확인			

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적합	부적합
5.1 작업지침	○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는 인정분야 및 범위별 작업지침 보유 여부		
5.2 방법의 적절성	○ 사업장소재지·부속시설에서 수행하는 방법과 현장 시험 및 교정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조건, 사용장비 등 차이를 고려하는 절차 및 보정 방법 등을 포함하였는지의 여부		
5.3 방법의 검증	○ 현장 시험 또는 교정 방법의 검증기록 보유 여부		
	○ 불특정 장소에서 수행되는 방법의 경우, 대표적인 환경을 고려하였는지의 여부		
제6조 기술기록			
6.1 기술기록 유지	○ 현장 시험 및 교정에 대한 기술기록의 보관·유지·관리 실시 여부		
	○ 현장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백업절차 보유 및 수행한 시점의 데이터인지의 입증		
	○ 장비가 생성한 파일 전체에 대한 수정없이 보관하는지의 여부		
	○ 백업파일의 일자가 측정 시 생성된 일자로 유지되는지의 여부		
6.2 현장 샘플링	○ 현장 샘플링이 특정 지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 근거 및 지점에 대해 기재하였는지의 여부		
제7조 결과보고			
7.1 결과의 식별	○ 현장 시험 및 교정 결과의 성적서 상 식별		
7.2 결과에 대한 정보	○ 환경조건 등이 현장 시험 및 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환경측정결과와 수행된 장소 등 관련 정보가 성적서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 특정 지역에서 수행된 경우, 수행 장소의 상세 정보 기재 여부		
	○ 수행된 장소의 주소표기가 어려운 경우 추적할 수 있는 이동 경로, 활동 지역 등으로 적절히 표기하였는지의 여부		